

'23.7.1. 시행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 적용대상(노무제공자)이 되는 화물차주

1. '23.7.1.부터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하나요?

☞ '20.7.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확대 되었으며, '22.7.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및 특정 품목(자동차, 곡물가루, 곡물, 사료) 운송 화물차주에 대하여 적용확대 되었습니다.

- '23.7.부터는 이러한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 확대 됩니다.

2. 화물차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적용범위가 동일한가요?

☞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화물차주로 적용확대 되었으나, 고용보험은 현행과 같이 질문 1의 특정 품목·산업에 따라 적용합니다.

3. 화물차주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말하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와 위·수탁차주(같은 법 제40조제1항, 일명 “지입차주”)가 포함됩니다.

4.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차주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란 어떤 차인가요?

☞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어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차종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 적재공간 有)와 특수자동차(화물 적재공간 無)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포함합니다.

[참고] 화물자동차 세부 유형(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종류	유형	화물자동차 세부 유형
화물 자동차	일반형	일반카고트럭류, 풀카고트럭류
	덤프형	덤프트럭류
	밴형	일반밴형자동차(탑차)
	특수 용도형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 자동하역자동차류, 이사화물수송자동차류, 유류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자동차류, ① 살수차류 ,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탱크로리류 벌크트럭류, 분뇨탱크로리류, 화학물질 탱크로리류, 오페수 탱크로리류 트랜스포터(Transporter)류, 셀프로더(Self-loader)류, 세이프티로더(Safety-loader)류 보틀캐리어(Bottle carrier)류, 원목수송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화물자동차) 현금수송자동차류(화물자동차), 곡물수송자동차류, 사료수송자동차류 동물수송자동차류, 활어수송용자동차류, 압축·압착진개자동차류 암롤(Arm roll)트럭류, 롤온(Roll on)트럭류, 진개덤프류, 진공탱크로리류 도로청소자동차류, 진공흡입자동차류, 하수도청소자동차류 ②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음식물수거자동차류, 그 밖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형 화물차량 (트레일러)	탱크트레일러류, 벌크트레일러류, 평판트레일러류, 컨테이너샤시트레일러류 저상식트레일러류, 덤프트레일러류 풀카고(Pull-cargo)트레일러류 코일 전용 트레일러	
견인형	트랙터(트레일러 연결 운송 차량)	
특수 자동차	구난형	렉커트럭류, 그 밖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 작업형	③ 고소작업차류 , 절연고소작업자동차류, 방송중계차류, 무선중계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특수자동차) 소방펌프차류, 화학소방차류, 내폭화학소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굴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현금수송자동차류(특수자동차), 그 밖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①,②를 제외한 와 특수작업형 사다리차(그 밖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화물차주에 해당

※ ①,②,③은 건설현장 화물차주로 별도 직종으로 산재보험 적용

5.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퀵서비스 배송 업무를 하는 기사는 노무제공자 직종 중 어느 직종에 해당하나요?

☞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차주 직종(제14호)에 포함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퀵서비스기사(제6호)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6. 택배기사나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들도 화물차주 직종(제14호)에 해당하나요?

☞ 택배기사나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화물차주 직종에 포함하지 않고 택배기사(제5호),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제12호)로 분류합니다.

7. 화물차주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나요? (예. 학생이 책상을 옮기기 위하여 화물차주를 직접 부른 경우)

☞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봅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화물자동차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배우자 등) 명의를 다를 경우,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 중 누구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이 경우 운전자는 명의자(타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 운전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명의자는 운전자를 위하여 실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명의자(타인)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9. 보조기사를 두고 있는 화물차주도 있는데, 이 사람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나요? 이 보조기사의 사업주는 누가 되나요?

☞ 노무제공자의 법적 정의(“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에 따라 노무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 보조기사를 둔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며, 보조기사의 사업주가 됩니다.

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연령(65세 이상), 소득(80만원 미만) 등에 따라 적용제외는지?

☞ 아닙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적용제외 대상자가 없으므로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 65세 이후 취득자, 외국인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11. 단발적으로 단 하루 용차기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용차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요?

☞ 산재보험은 적용제외자가 없으므로 단 하루 사용한 용차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12. 화물차주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운전 외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도 보장이 되며, 화물의 상·하차, 휴게시간, 운행 대기 중 재해 등 업무와 연관된 모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져 보상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 휴업손실 등 현금급여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나,

-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따라서 산재보험은 화물차주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2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산재보험법 상 사업주)

13.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누가 되나요?

- ☞ 보험가입자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 따라서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운송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①운송사업자와 ②운송주선사업자(자기계약에 한함), ③화주(사업자)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14.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선착불)만을 행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 ☞ 아닙니다.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만 하는 경우 화물차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주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참고) 주선사업자의 운송 형태별 보험가입자

구분	자기계약(인수증)	중개대리(선착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선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계약인수 방식) ○ 화물차주는 주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선사업자는 원화주와 화물차주의 계약을 중개만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 ○ 화물차주는 원화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구조		
사업주 (보험가입자)	주선사업자	원화주

15. 사업자등록을 한 시장 상인이 화물차주에게 직접 운송을 의뢰한 경우 시장 상인도 이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화주인 시장 상인은 사업자이므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16. 운송사업자(A)가 화물차주와 위·수탁 계약만을 체결하고, 실제 물량은 다른 운송사업자(B)가 준 경우 누가 보험가입자가 되나요?

☞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이므로 화물차주에게 실제 물량을 준 운송사업자(B)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17. 어떻게 하면 화물차주의 보험가입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 운송 종료 이후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를 보험가입자로 보면 됩니다.

18.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 사업장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 신고(후술) 및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19. 한 달에 용차기사를 수 백명을 사용할 수도 있는 산재보험 신고가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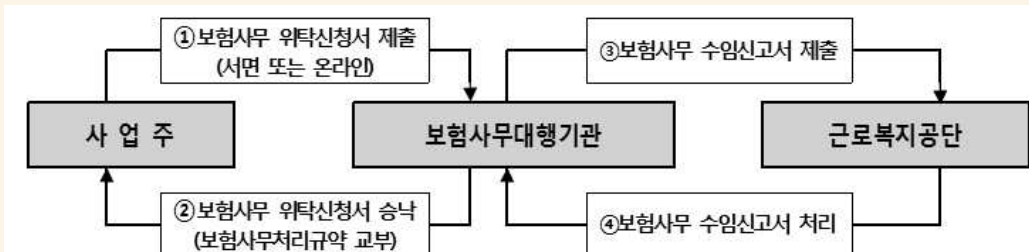
☞ 화물차주가 입사 또는 퇴사할 때마다 신고하는 입·이직 신고제도는 '23.7.1.부터 폐지됩니다.

- 보험료 산정을 위해 이 용차기사에 대해 월 1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 영세 운수사업자는 매 달 월 보수액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보험행정 부담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무료로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이용 절차**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음

3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21.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화물차주 개인별 월 보수액(실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text{산재보험료} = \text{개인별 월 보수액} \times \text{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로 고시

※ 기존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주의 경우 '23.6.30.까지만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로 보험료 산정

22. 개인별 월 보수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고용보험과 동일한 방식>

$$\text{월 보수액} = (A - B) - C \quad [C = (A - B) \times \text{경비 공제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로 고시

23.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화물차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월 단위 합산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 화물차주의 경비공제율은 얼마인가요?

☞ '23.7.~'24.6.에 적용되는 화물차주의 경비공제율은 30.3%입니다.

25.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 '23.7.~'24.12.에 적용되는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요율(직종별 요율)은 1.7%이며,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1%가 가산 됩니다.

26.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사무직 임금근로자의 요율이 인상되나요?

☞ '23.7.부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종별 요율제가 도입되어 임금근로자와는 별도로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되더라도 사무직 근로자의 요율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27. 화물차주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임금근로자의 요율 산정 시 포함되나요?

☞ '23.7.부터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제로 인하여 화물차주의 재해에 따라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장의 요율(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8.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보험가입자는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정계약자인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 계약(특히, 용차기사)한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만약, 상기 기한까지 신고 보험가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화물차주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29. 월 보수액 신고를 잘못된 경우 정정이 가능한가요?

☞ 사업주 또는 화물차주는 신고된 월 보수액이 잘못된 경우 정정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화물차주가 정정신고하는 경우 소득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0. 고용보험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기한은 노무제공월 다음 달 15일,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서 제출기한은 노무제공월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동 신고서를 한 달에 두 번 제출해야 되나요?

☞ 아닙니다. 법령상 산재보험은 상용·단기노무제공자를 구분하지 않으나, 사업주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모두 적용 중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기한에 맞춰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1. 월 보수액을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보험도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월 보수액 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www.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에서 가능하며,

- 해당 특고센터 전자팩스로 ‘월 보수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월 보수액 신고 서식이 동일하므로 한 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32. 산재보험료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상·하한액이 있는지? 가령 월 보수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과 달리 상·하한액이 없으므로 모두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3.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나요?

☞ '23.7.~'24.6.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 예정이며, 정부는 25% 또는 50% 경감을 추진(6월말까지 결정) 중에 있습니다.

34. 단발성 용차기사를 사용하였을 때 용차기사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 보험료를 언제 원천공제 하여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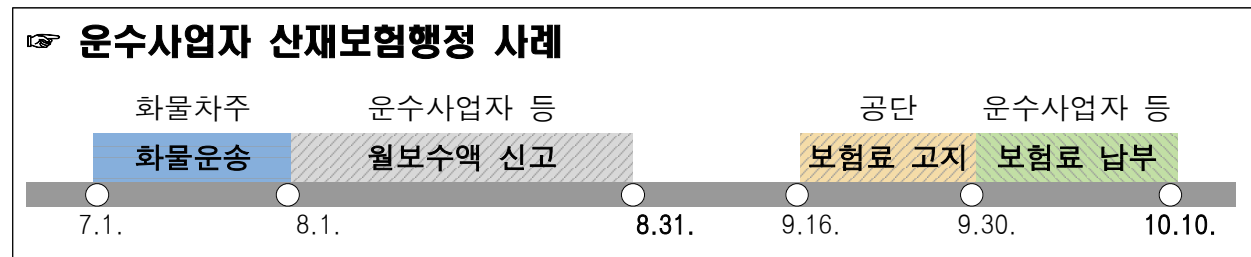
- ☞ 법령은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납부서 수령 시기가 아닌 운송료를 용차기사에게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 하여야 합니다.

35. 산재보험료 부담과 납부하는 방법은?

- ☞ 사업주(운수사업자 등)와 노무제공자(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 ☞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합산하여 매월 납부 합니다.

36. 보험가입자(운수사업자)는 '23.7. 이후 최초 보험료 납부를 언제 하나요?

- ☞ '23.7. 화물차주를 사용하여 화물 운송을 하였다면 운수사업자는 8.31.까지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야 하고,
 - 공단은 9.16.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며, 해당 보험료 납부서는 9월말에 운수사업자에게 고지되고, 운수사업자는 10.10.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보험료 산정 예시

- ☞ 화물차주의 7월 총 사업소득이 9,000,000원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 경비: $9,000,000 \times 30.3\% = 2,727,000$ 원
 - 월 보수액: $9,000,000 - 2,727,000 = 6,273,000$ 원
 - 산재보험료: $6,273,000 \times 1.8\% = 112,914$ 원 = 112,910원(원단위 절사)
 - 경감(50% 가정) 보험료: $112,910 \times 50\% = 56,455$ 원 = 56,450원(원단위 절사)
 - 납부할 보험료: $112,910 - 56,450 = 56,460$ 원
 -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 $56,460 \div 2 = 28,230$ 원

37. 화물차주는 현재 민간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이중부담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종합보험(임의가입)으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특약)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는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산재보험과 무관합니다.
-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므로 산재보험료와 이중부담이 아닙니다.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영역이나 임의가입 사항이므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을 제외함으로써 산재보험료와의 중복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므로 해당 특약에 가입된 사람이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38.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간 차이점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용차기사 적용	적용	적용제외	
적용대상 세부 유형	모든 화물차주 (품목·산업 구분 폐지)	특정 품목	시멘트·컨테이너·철강재·위험물질, 자동차·곡물·곡물가루·사료
		특정 산업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적용제외자	없음	연령(65세 이상자), 소득(월 보수액80만원 미만자), 외국인 등	
취득·상실	입·이직 신고 폐지	취득·상실신고 필요	
휴업신고	미신고	신고	
월 보수액	사업주가 신고한 실보수	유통배송기사를 제외한 모든 화물차주 기준보수 적용	

4 플랫폼 운영자 특례

39. 플랫폼 운영자 특례가 무엇인가요?

☞ 보험가입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산재보험 행정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주로부터 노무제공을 요청 받아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
-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기사, 화물차주 등
- (플랫폼 운영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예) 퀵·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 등에게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사
- (플랫폼 이용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보험가입자)
예) 플랫폼을 이용하는 퀵업체, 대리운전업체, 운수사업자 등

40. 플랫폼 운영자는 어떤 보험행정의무를 지나요?

☞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사업주이자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다음의 보험행정을 이행(플랫폼 운영자가 사업주가 아님에 유의)

<보수지급 중개 플랫폼> → 퀵·대리운전 플랫폼, 퀵·화물 겸용 플랫폼

- ①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 ②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용개시·종료 신고
- ③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로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 ④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
- ⑤ 5년 간 노무제공 정보 보관 및 자료제공 협조 의무
- ⑥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의 개설

<보수지급 미중개 플랫폼> → 화물 전용 플랫폼

- 보수지급 중개 플랫폼 의무 중 이용종료 신고, 월 보수액 정정 및 ④·⑥의 의무 면제
→ 월 보수액 정정 및 원천공제·납부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운수사업자 등)가 직접 이행

(참고) 보수 중개형·미중개형(플랫폼 내에서 운송료의 정산 여부) 플랫폼 간 비교

구분	보수 중개형	보수 미중개형
플랫폼 종류	퀵·대리운전 플랫폼 퀵·화물 검용 플랫폼	화물 전용 플랫폼
이용 개시·종료 신고	플랫폼 운영자가 수행	
	개시·종료 모두 신고	개시 신고만 이행
월 보수액 신고	플랫폼 운영자가 수행	
월 보수액 정정 및 원천공제·납부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41. 운수사업자가 화물 플랫폼을 통해 용차기사를 사용한 경우 플랫폼사가 모든 용차기사에 대해 산재보험 월 보수액을 신고하는지?

- ☞ 보수 중개 및 플랫폼사의 보험가입자 확인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 (보수 중개형 화물 플랫폼) 해당 플랫폼사가 모든 화물 운송 건에 대해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수 미중개형 화물 플랫폼)
 - (플랫폼사가 신고) ‘사업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①운송사업자, ②자기명의로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인수증)하는 주선사업자, ③사업자 화주)의 운송 의뢰 건
 - (운수사업자가 신고) 주선사업자의 중개대리(선착불) 운송 의뢰 건, 플랫폼 미등록 운수사업자 또는 화주가 전화로 플랫폼에 운송 접수 건

42. 화물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화물운송이 취소된 경우,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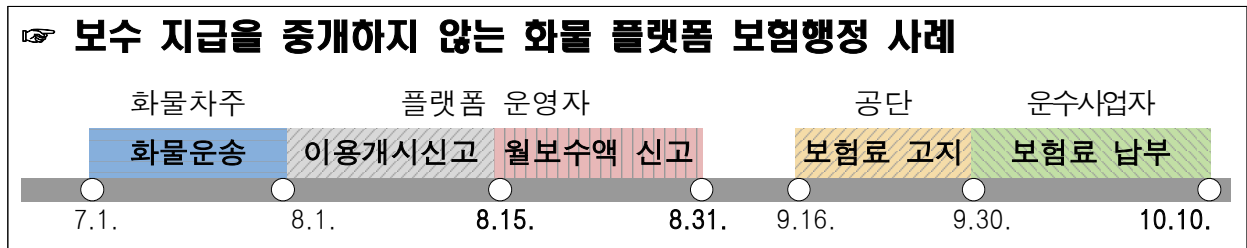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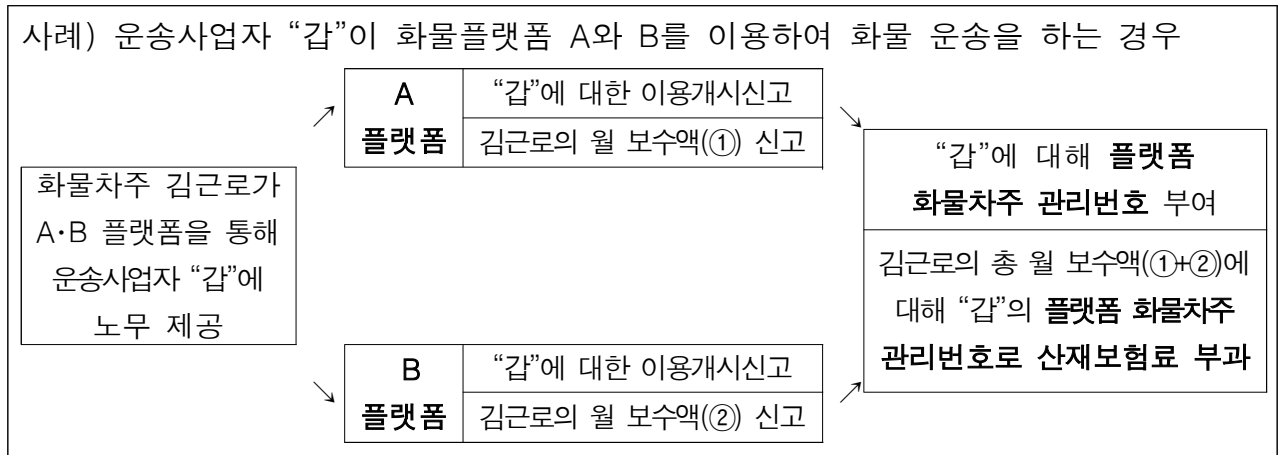
- ☞ 운수사업자 등 사업주가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통해 산재보험료 부과를 취소해야 합니다.

43. 운수사업자가 임금근로자와 오프라인으로 사용하는 고정기사, 화물 플랫폼 통해 사용한 용차기사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관리 방법은?

☞ 임금근로자, 오프라인 화물차주, 플랫폼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각각 부여됩니다. 특히, 화물차주의 경우 오프라인과 플랫폼 간 월 보수액 신고 의무자가 다르므로 관리번호가 분리됩니다.

44. 하나의 운수사업자가 2개의 화물 전용 플랫폼(보수 미중개)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서도 2개로 고지되는지?

☞ 아닙니다. 운수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하나의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하나의 납부서만 고지됩니다.



4 산재보상

45. 화물차주가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가 재해자를 위해서 산재보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재해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주는 날인 제도는 '18.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재해자 본인의 서명만으로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6. 화물차주 재해 시 최초 산재보험 청구서(요양급여신청서)는 공단 어디로 제출 하나요?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소속 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7. 화물차주가 자택에서 나와 차고지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 네, 출퇴근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 화물차주가 화주 사업장에서 물품 상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이 되나요?

☞ 네,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9. 혼적(사업주가 다름) 중 업무상 사고 발생 시 누가 산재보상책임을 져야하는지?

☞ 2개 회사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던 중 재해 시 혼적과 관련된 모든 사업주가 재해책임의 사업주가 됩니다.

❖ 화물차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 1588-0075(통화연결 후 0과 0을 차례로 누르면 상담원과 바로 연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담당전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원도	(전화) 02-6946-0500 (팩스) 0505-290-3102 0505-175-1203 0505-175-1204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1부 02-6946-05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2부 02-6946-053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3부 02-6946-0560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경기도(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	(전화) 032-712-0500 (팩스) 0505-134-1102 0505-175-1103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1부 032-712-05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고가입2부 032-712-0520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화) 051-790-0300 (팩스) 0505-132-1102 0505-173-1103	051-790-0304/0315/0330 /0312/0329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화) 042-718-0600 (팩스) 0505-139-1102 0505-250-1103	042-718-0610/0620 042-718-0602~0604/0612/ 0616/0623/0624/0628/0629